

의안번호	2208139
의 퇴 인	강경숙 의원
회 답 일	2025.04.21.
추계번호	25C088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②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903억 6,700만원, 2030년 5,369억 2,600만원 등 향후 5년간 2조 4,728억원(연평균 4,945억 6,40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안 제20조의6제1항)	481,257	445,601	473,654	498,941	527,816	2,427,270	485,454
전문교육 실시 (안 제20조의6제4항)	9,110	9,110	9,110	9,110	9,110	45,548	9,110
추가재정소요	490,367	454,711	482,764	508,051	536,926	2,472,819	494,564

주: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의 배치 및 역할)	(제1항) 국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에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4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경찰청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의 배치 및 역할)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서에서는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②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학교전담경찰관 배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인건비,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의 합으로 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1명씩 배치된다고 가정하고 산출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되나, 채용 일정 등을 고려해 2026년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일괄 충원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
 -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되는 학교의 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
 - 참고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는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규정하고 있음¹⁾
 -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비용은 경찰청의 '24년 학교전담경찰관 전문화과정 위탁교육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

1)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인건비,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의 합으로 함

(1) 인건비

- 학교전담경찰관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임금, 수당 및 기관부담금으로 구성됨
 - 임금과 수당은 신규 채용 학교전담경찰관 수에 1인당 임금 및 수당을 곱하여 산출
 - 기관부담금은 임금과 수당을 합한 금액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관부담 요율 전망치를 곱하여 산출
- (학교전담경찰관의 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에서 기존에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 수를 제외한 11,013명으로 함
 -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되는 학교의 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
 - 각급학교의 수는 교육부의 '25년 2월 통계를 참조하여 12,146개교로 함
 - 학교전담경찰관의 현원이 1,133명이므로 추가로 배치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수는 11,013명임

[표 2] 각급학교의 수

(단위: 개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 계
학교 수	6,284	3,286	2,380	196	12,146

자료: 교육부

- (임금)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준용하되, 2026년 3호봉에서 매년 1호봉씩 상승한다고 가정
 - 임금은 추계기간 동안 매년 최근 3년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인 2.4%만큼 상승한다고 가정

- (수당) 정근수당 및 가산금, 직급보조비 등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수당 등에 대한 기준」을 참조하여 산출
 - 정근수당은 매년 월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고, 「공무원수당 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해당 비율은 2026~2027년에 20%, 2028~2030년에 40%로 함²⁾
 - 명절휴가비는 설, 추석에 합해 매년 월급의 120%가 지급됨
 - 이외에 정근수당 가산금, 직급보조비, 급식비를 합해 매월 34만 5,000원이 소요된다 가정
- (기관부담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의 합으로 하며, 임금과 수당을 합한 금액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관부담 요율 전망치를 곱하여 산출

[표 3] 인건비 항목별 1인당 비용

(단위: 천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임금	25,442	26,669	28,072	29,672	31,494	141,350	28,270
수당	7,108	7,251	7,883	8,096	8,339	38,678	7,736
기관부담금	3,621	3,879	4,225	4,556	4,942	21,223	4,245
합 계	36,172	37,800	40,180	42,325	44,775	201,251	40,2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4] 인건비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임금	280,196	293,711	309,161	326,781	346,840	1,556,689	311,338
수당	78,283	79,860	86,815	89,165	91,839	425,962	85,192
기관부담금	39,878	42,723	46,526	50,181	54,423	233,730	46,746
합 계	398,357	416,294	442,502	466,126	493,102	2,216,381	443,27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며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제1항 관련)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2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 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 금액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 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2)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

- (기본경비) 신규 채용 학교전담경찰관의 인건비에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른 인건비 대비 물건비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해당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자산취득비) 학교전담경찰관을 채용하는 2026년에만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신규 채용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수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정한 1인당 자산취득비를 곱하여 산출

[표 5] 기본경비·자산취득비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기본경비	28,044	29,307	31,152	32,815	34,714	156,033	31,207
자산취득비	54,856	—	—	—	—	54,856	10,971
합 계	82,900	29,307	31,152	32,815	34,714	210,889	42,17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1명씩 배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812억 5,700만원, 2030년 5,278억 1,600만원 등 향후 5년간 2조 4,272억원(연평균 4,854억 5,400만원)으로 추계

[표 6]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인건비	398,357	416,294	442,502	466,126	493,102	2,216,381	443,276
임금	280,196	293,711	309,161	326,781	346,840	1,556,689	311,338
수당	78,283	79,860	86,815	89,165	91,839	425,962	85,192
기관부담금	39,878	42,723	46,526	50,181	54,423	233,730	46,746
기본경비	28,044	29,307	31,152	32,815	34,714	156,033	31,207
자산취득비	54,856	—	—	—	—	54,856	10,971
합 계	481,257	445,601	473,654	498,941	527,816	2,427,270	485,454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전문교육 실시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경찰청의 '24년 학교전담경찰관 전문화과정 위탁교육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전문교육 대상자 수와 1인당 전문교육 비용을 곱하여 추계
 - (대상자 수) 기존에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학교전담경찰관이 전문교육을 받는다고 가정해 12,146명으로 함
 - 학교전담경찰관의 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
 - 전문교육은 매년 1회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
 - (1인당 전문교육 비용) '24년 학교전담경찰관 전문화과정 위탁교육의 1인당 소요예산을 참조하여 75만원으로 하되, 해당 단가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됨을 가정
 - '24년 학교전담경찰관 전문화과정 위탁교육은 학교전담경찰관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억 2,095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교육은 청소년심리의 이해, 자살시도 청소년 대응요령, 청소년 면담기법 교육,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소년사건 진행절차로 구성됨
- 학교전담경찰관 전문교육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91억 1,000만원씩 총 455억 4,800만원으로 추계

[표 7] 전문교육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대상자 수(A, 명)	12,146	12,146	12,146	12,146	12,146	-	-
1인당 전문교육 비용 (B, 천원)	750	750	750	750	750	-	-
추가재정소요 (C=A×B, 백만원)	9,110	9,110	9,110	9,110	9,110	45,548	9,110

주: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